

소비자제품보증법

(맥너슨-모스 보증법)

목 차

- 제1조. 정 의
- 제2조. 보증내용에 관한 규칙
- 제3조. 서면보증의 명시
- 제4조. 연방의 보증에 관한 최소기준
- 제5조. 소비자제품에 대한 완전보증 및 제한적 보증
- 제6조. 서비스계약, 조건에 대한 완전·명백·명확한 공개에 관한 규칙, 서면보증에 대한 추가 또는 서면보증의 대체
- 제7조. 서면 또는 묵시적 보증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보증인의 대표 자 지정
- 제8조. 묵시적 보증
- 제9조. 규칙공포에 관한 위원회의 절차
- 제10조. 소비자분쟁에 관한 구제방법
- 제11조.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
- 제12조. 시행일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 (1) “소비자제품”이라 함은 통상으로 유통되고 일반적으로 개인용·가족용·

가정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적 개인의 소유물로서 부속 또는 설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동산에 부속되거나 설치되려고 의도되었던 소유물을 포함한다.

(2) “위원회”라 함은 연방거래위원회를 말한다.

(3) “소비자”라 함은 (재판매 목적이외의) 소비자제품의 구매자, 제품에 적용 가능한 묵시적 또는 서면적 보증 (또는 서비스계약) 기간 동안에 그 제품을 양도받은 자, 보증인(또는 서비스계약자)에 대한 보증(또는 서비스계약)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관계주법에 의하여 또는 그 보증(또는 서비스계약)의 조건에 의하여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공급자”라 함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증인”이라 함은 서면보증서를 제공하거나 서면보증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 또는 공급자, 묵시적 보증에 의하여 의무가 있거나 의무가 생길 수 있는 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6) “서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A) 공급자가 제품의 재료 또는 기능의 특징과 관련하여 구매자에 대하여 소비자제품의 판매과정에서 행한 서면 약속 또는 사실에 대한 서면확약 및 제품의 재료 또는 기능에 대한 하자없음 또는 특정보증기간내에 특정 보증 범위 수준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확약 또는 약속

(B) 그 제품이 보증서에 기재된 명시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제품의 공급자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행한 그 제품에 대한 환불, 수리, 교환 기타 구제방법에 관한 서면 보증

서면확약, 약속 또는 보증은 그 소비자제품의 재판매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급자와 구매자간 매매계약의 근거의 일부가 된다.

(7) “묵시적 보증”이라 함은 소비자제품의 공급자가 판매와 관련하여 (이 법 제8조 및 제4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주법에 의하여 발생한 묵시적 보증을 말한다.

(8) “서비스계약”이라 함은 특정 기간이나 확정된 기간 중에 소비자제품의 보존 또는 수리 (또는 보존과 수리 전부)와 관련된 서비스의 이행에 대한 서면계약을 말한다.

(9) “합리적 및 필요한 보존”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용행위를 말한다.

(A)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소비자의 행위

(B)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품의 기능을 사용하여 소비자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

(10) “구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보증인이 선택한 행위를 말한다.

(A) 수 리

(B) 교 환

(C) 환 불

다만, 보증인은 (i)보증인이 교환 및 수리가 통상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한 기간내에 교환 및 수리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소비자가 환불을 승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을 선택할 수 없다.

(11) “교환”이라 함은 보증된 소비자제품과 동일하거나 합리적으로 유사한 새로운 소비자제품의 제공을 말한다.

(12) “환불”이라 함은 실구매가 (위원회의 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의 실제적 사용에 기초한 덜 합리적인 감가상각액)의 환불을 말한다.

(13) “통상과정에서 유통된”이라 함은 통상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통상과정에 도입되거나 통상과정에 도입되기 위하여 인도되거나 통상과정으로 도입된 후에 판매 또는 유통되기 위하여 유보된 상태를 말한다.

(14) “통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역, 거래, 통상 또는 운송을 말한다.

(A) 주내의 지역과 주외의 지역간 무역, 거래, 통상 또는 운송

(B) (A)의 규정에 정한 무역, 거래, 통상, 운송에 영향을 미침

(15) “주”라 함은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제도, 괌, 파나마 운하지대, 사모아 제도를 말한다. “주법”이라 함은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의 준주 또는 부속령에 한하여 적용되는 미국법을 포함하며, “연방법”이라 함은 주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 보증내용에 관한 규칙

(a) 조건에 대한 충분하고 명백한 공개, 보증내용에 관한 추가적 요건

소비자제품의 마케팅에서 경쟁력 강화, 사해행위 금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적절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면보증서에 의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자제품을 보증하는 보증인은 위원회의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그 보증의 조건에 대하여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하고 명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서면보증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의 특정
- (2) 보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당사자의 특정
- (3)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부분
- (4) 제품의 하자, 고장 또는 보증인이 서면보증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 및 보증기간
- (5)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행위 및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 (6) 보증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예외
- (7) 보증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행해야 하는 단계적 절차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의무이행의 권한을 가진 자 또는 단체의 특정을 포함한다.
- (8) 보증인 및 보증을 규정한 문서에 의하여 제공된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구매자는 법원에서의 법적인 구제방법을 신청하기 전에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 (9) 소비자가 이용가능한 법적인 구제방법에 대한 간단하고 일반적인 설명
- (10) 보증인이 보증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때

(11) 제품의 하자, 고장 또는 서면보증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에 대한 통지 후에 보증인이 보증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할 예정인 기간

(12) 보증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의 특징 또는 성질

(13) 보증의 성질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단어 또는 어구를 사용한 보증의 요건

(b) 소비자의 조건의 이용가능성, 정보의 제시와 표시에 관한 방법 및 형태, 기간, 서면보증 또는 서비스계약에 관한 기간의 연장

(1)

(A) 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판매전에 소비자(또는 장래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제품에 관한 서면보증의 조건을 정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B)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의 서면보증에 관한 정보가 광고, 라벨, 판매시점관리자료 기타 서면표시에 포함된 때에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그 정보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나타내고 표시하는 방법 및 형태의 결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이 항 제3호의 규정 이외의)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소비자제품 또는 그 제품의 구성성분의 일부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서면보증의 기간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3) 위원회는 서면보증 또는 서비스계약이 (10일을 경과하는)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도 유효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합리적인 기간은 소비자제품의 서면보증에 대한 불합치에 의하여 또는 서면보증 (또는 서비스계약)에 정한 기간내에 보증인에 의한 그 보증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비자가 그 소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

는 기간을 말한다.

(c) 서면 또는 묵시적 보증에 관한 조건의 금지, 위원회의 포기

소비자제품의 보증인은 상표, 거래 또는 회사 상호가 특정된 (보증조건에 의하여 비용부담없이 제공되는 품목 또는 서비스 이외의) 품목 또는 서비스를 그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제품의 서면 또는 묵시적 보증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지 못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에서의 금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1) 특정된 품목 또는 서비스가 보증된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된 제품의 적절한 작동에 대하여 보증인이 위원회를 만족시킨 경우

(2) 위원회가 금지의 포기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위원회는 이 항에서의 금지의 포기에 관한 모든 적용을 연방관보에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공청회를 허용하여야 하며, 그 적용의 이유를 포함하여 적용의 처분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d) 상세한 실질적 보증규정의 포함

위원회는 보증인이 보증서상의 기준에 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실질적 보증규정을 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e) 5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비자제품에 대한 적용가능성

이 조의 규정은 소비자에게 5달러 이상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소비자제품에 관한 보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3조. 서면보증의 명시

(a) 완전(기간의 기재) 또는 제한적 보증

서면보증에 의하여 소비자제품을 보증하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보증을 명백하고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서면보증의 명시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보증에 이 법 제4조에서 정한 연방의 보증에 관한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완전(기간의 기재) 보증”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2) 서면보증에 이 법 제4조에 정한 연방의 보증에 관한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 보증”으로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b) 고객만족의 표시 또는 진술을 위한 요건, 기준등의 적용

이 조 및 이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고객만족에 관한 일반적 정책의 표현과 유사하고 특정제한의 대상이 아닌 표시 또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위원회에 의한 제외

이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개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 이외에 위원회는 서면보증에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완전(기간의 기재)” 또는 “제한적” 보증 중의 하나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 규칙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d) 10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충분한 보증이 명시되지 아니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적용가능성

이 조 제a항 및 제c항의 규정은 “완전(기간의 기재) 보증”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소비자에게 10달러 이상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소비자 제품에 관한 보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조. 연방의 보증에 관한 최소기준

(a) 서면보증에 의한 구제방법, 묵시적 보증의 기간, 서면보증 또는 묵시적 보증의 위반에 관한 간접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 환불 또는 교환의 선택

서면보증에 의하여 소비자제품을 보증하는 보증인은 연방의 보증에 관한 최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 제품의 하자, 고장 또는 서면보증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한 기간내에 비용의 부담없이 그 소비자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방법이어야 한다.

(2) 이 법 제8조 제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인은 제품에 대한 묵시적 보증의 기간에 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

(3) 보증인은 그 제품에 관한 서면보증 또는 묵시적 보증의 위반에 관한 간접손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그 배제 또는 제한이 그 보증서에 명백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인이 제품의 하자 또는 고장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를 시도한 후에도 그 제품(또는 제품의 구성부분)의 하자 또는 고장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각 경우에 따라) 비용의 부담없이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일부에 대한 환불 또는 교환의 선택을 소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와 다른 정황에서의 제품의 하자 또

는 고장의 특정 종류를 치료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횟수를 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보증인이 소비자제품의 구성부분을 교환할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없이 제품에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b) 보증인이 소비자에게 부과한 의무 및 조건

(1)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증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보증인은 고장났거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서면보증에 합치하지 않는 소비자제품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증하는 조건으로서 소비자에게 통지이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규칙제정절차에서 그 의무가 합리적임을 증명했거나 행정적 또는 (사적 집행을 포함한) 사법적 집행절차 또는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에서 그 의무가 합리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에 대한 조건으로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선취특권 및 기타 저당권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이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의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이 조 제a항에 정한 의무 및 “완전(기간의 기재)” 보증되는 다른 종류의 소비자제품에 대한 보증인 의무의 적용가능성을 상세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는 보증인으로부터 소비자제품의 각 소비자에 대하여 확대된다.

(c) 기준의 포기

보증인이 보증된 소비자제품의 하자, 고장, 서면보증을 준수하지 않은 이

유가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중에 (하자 또는 고장으로 인하지 않은) 손해 또는 (합리적 및 필수적 유지의 실패를 포함한) 비합리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d) 비용부과 없는 구제

이 조 및 이 법 제2302조 제c항의 적용을 위하여 “비용부과 없이”라 함은 보증인이 보증된 소비자제품에 대한 필요한 구제방법으로서 보증인 또는 그의 대표가 부담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비용부과 없는 구제에 대한 이 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보증인이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구제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행되지 아니했거나 보증인이 구제를 보증하는 조건으로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하여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보증인에 대한 행위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부대비용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e) 사법적 소송을 위하여 완전보증을 명시한 제품에 대한 기준의 포함

공급자가 “완전(기간의 기재)” 보증으로서 소비자제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명시한 경우에 이 법 제10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주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 제품에 관한 보증은 이 조의 최소요건 및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5조. 소비자제품에 대한 완전보증 및 제한적 보증

이 법의 규정이 완전보증 및 제한적 보증이 명백하고 명확하게 구별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된 소비자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지 못한다.

제6조. 서비스계약, 조건에 대한 완전·명백·명확한 공개에 관한 규칙, 서면보증에 대한 추가 또는 서면보증의 대체

(a) 위원회는 서비스계약의 조건이 충분하고 명백하고 명확하게 공개되는 방법 및 형태를 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b) 이 법의 규정은 그 계약이 충분하고 명백하고 명확하게 그 조건을 공개하고 언어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보증에 추가하거나 서면보증에 갈음하여 공급자 또는 보증인이 소비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서면 또는 묵시적 보증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보증인의 대표자 지정

이 법의 규정은 보증인이 서면 또는 묵시적 보증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표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보증인은 지명된 대표의 보수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합의하여야 하나, 그 대표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경감하거나 공동보증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 묵시적 보증

(a) 거부 또는 변경에 대한 제한

어떤 공급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조 제b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제품에 관한 묵시적 보증을 거부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1) 그 공급자가 소비자제품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서면보증을 행하는 경우

(2) 판매할 때 또는 판매후 90일내에 그 공급자가 소비자제품에 적용되는 서비스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한 경우

(b) 기간의 제한

(이 법 제4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이외에) 이 법의 적용을 위하여 묵시적 보증의 기간은 서면보증상의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공정하며 보증서에 완전하고 명백한 용어로 현저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한다.

(c) 거부, 변경, 제한의 효과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거부, 변경, 제한은 이 법 및 주법의 목적을 위하여 무효이다.

제9조. 규칙공포에 관한 위원회의 절차

(a) 구두표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은 연방법전 제5편 제553조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서면제출외에 데이터, 의견, 논쟁에 대한 구두표현의 기회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구두표현은 등본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연방법전 제50편 제57a조 제e항 제3호 (B)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규칙은 동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편 제57a조 제e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b) 중고차 판매에 관한 보증 및 보증관행

위원회는 1975년 1월 4일 이후 일년내에 중고차의 판매에 관한 보증 및 보증관행을 처리하기 위한 규칙제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된 보호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증 및 보증관행을 처리할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없이 판매된 중고차임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개의 내용 및 형식을 특정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분쟁에 관한 구제방법

(a)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 확립, 최소요건을 정한 규칙, 보증인의 준수 효과, 비공식적 절차 또는 위원회의 이행에 대한 심사, 현행 비공식적 절차에 대한 적용

(1) 의회는 소비자분쟁이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는 절차의 확립을 보증인에게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선언한다.

(2)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서면보증의 조건을 포함한 비공식적 분쟁절차에 관한 최소요건을 정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규칙은 독립적 또는 정부단체의 비공식적 분쟁절차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3) 1인 이상의 보증인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규칙요건을 충족시키는 비공식적 분쟁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i),(ii)의 규정에 의한다.

(A) 보증인이 비공식적 분쟁절차를 확립한 경우

(B) 그 절차 및 절차의 이행이 규칙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C) 소비자가 보증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구제를 구하기 전에 비공식적 분쟁절차에 의존하는 요건을 서면보증에 포함시키는 경우

(i) 소비자는 이 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소송외의)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가 처음부터 그 절차에 의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소비자단체는 법원이 지정된 원고의 대표능력을 성립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한도를 제외하고 이 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그 소비자단체가 보증의무에 관한 집단소송에서의 지정된 원고임을 피고에게 통지함에 의하여) 지정된 원고가 처음부터 그 절차에 의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의 경우에 지정된 원고의 대표자격은 민사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제23조의 적용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한다. 보증의무로 인한 민사소송 및 그 절차에서 심리된 쟁점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그 절차상 결정은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4) 위원회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제출된 소장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인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면보증서에 명시된 분쟁해결절차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그 절차 또는 절차의 이행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가진 권한으로 적절한 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규칙이 시행될 때까지 이 항은 소비자제품 보증에 관한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 절차가 불공정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b) 금지되는 행위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칙)에 의하여 어떤 자에게 부과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칙)에 포함된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연방법전 제50편 제45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c) 기만적인 보증, 요건의 불합치, 금지위반에 관하여 법무장관 또는 위원회의 금지절차, 절차, 정의

(1) 연방지방법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 또는 위원회가 선임한 변호인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A) 보증인이 소비자제품에 관한 기만적인 보증의 이행

(B)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어떤 자에게 부과된 요건에 불합치함.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의 최종 성공가능성의 고려 및 형평성을 비교검토하여 그 소송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후에 보증금 없이 일시적 제한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가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연방법전 제50편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이 일시적 제한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한 후 법원이 정한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명령은 법원에 의하여 무효가 되거나 더 이상의 효력이 없다. 어떤 소송은 당사자가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정의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권에 제3자들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그들을 소환할 수 있고 어떤 지역으로든 영장을 송달할 수 있다.

(2) 이 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보증”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 보증

(i) 허위나 사기 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주의의무를 행사하는 합리적인 개인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확약, 약속, 설명, 표시를 포함함

(ii)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주의의무를 행사하는 합리적인 개인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함

(B) 그 보증의 조건이 합리적인 개인에 대한 기만의 범위 및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guaranty” 또는 “warranty”와 같은 용어의 사용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보증서

(d) 손해배상에 관한 소비자의 민사소송등, 관할권, 비용의 회복, 심리가 가능한 청구

(1) 이 조 제a항 제3호 및 제e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 서면보증, 묵시적 보증, 서비스계약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공급자, 보증인, 서비스계약자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및 다른 법적·형평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A) 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관할법원

(B) 이 항 제3호에 의하여 미국의 적절한 지방법원

(2) 이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그는 (소비된 실제시간에 근거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법원이 승소한 원고가 합리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한 비용 및 수수료 또는 그 소송의 개시 및 기소와 관련된 비용과 수수료의 총액과 동등한 액수를 재판의 일부로서 회복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 비용의 지급이 비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어떤 청구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이 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심리되지 아니한다.

(A) 개인의 청구액이 총 25달러 이하인 경우

(B) 이 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를 근거로 계산된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총 청구액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

(C) 그 소송이 집단소송으로서 제기되었으며 지정된 원고의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

(e) 집단소송, 조건, 관련 절차

(이 조 제a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보증에 관한 소송 또는 집단소송 이외의) 소송은 서면 또는 묵시적 보증 또는 서비스계약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 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지 못하며, 법원이 지정된 원고의 대표자격의 성립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실패에 관하여 소비자단체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보증 또는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의무준수의 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 제a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보증에 관한 집단소송을 제외하고) 서면 또는 묵시적 보증 또는 서비스계약의 위반으로 이 조 제d항에 의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기회는 지정된 원고가 제공할 것이며 그들은 집단을 대표하는 소송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지정된 원고의 대표자격은 민사 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제23조의 적용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한다.

(f) 구제집행의 대상인 보증인

이 조의 적용을 위하여 사실에 관한 서면확약, 약속 또는 보증을 실제적

으로 행하는 보증인만이 서면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서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는 그 보증인에 한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

(a) 연방거래위원회법 및 연방종자법

(1) 이 법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연방거래위원회법 또는 독점금지법으로서 정의된 법을 폐지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연방종자법을 폐지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며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재배를 위한 종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b) 권리, 구제 및 책임

(1)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주법 또는 기타 연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리 또는 구제를 무효로 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2) (이 법 제8조 및 제4조 제a항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이외에) 이 법의 어떤 규정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개인적 손해에 관하여 어떤 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거나 책임을 부과함

(B) 어떤 자에 대한 간접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에 관한 주법의 규정을 대체함

(c) 주의 보증법

(1) 이 조 제b항 및 이 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의 요건은 이 법 제2조, 제3조, 제4조 (또는 그 조에 의한 규칙)에 합치하는 서면보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서면보증 또는 서면보증에 의한 이행에 관한 표시 또는 공개와 관련됨

(B) 이 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이 법 제2조, 제3조, 제4조를 이행하는 규칙)의 적절한 요건의 한도내에 있음

(C) 이 법 제2조, 제3조, 제4조 (또는 이 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칙)의 요건과 동일하지 아니함

(2) 관련 주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 법이 적용되는 거래에 관한 주의 요건을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따라) 결정한 경우에는

(A) 소비자에게 이 법의 요건보다 더 큰 보호를 제공한다.

(B) 부당하게 주간통상에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그 주 요건은 큰 범위의 요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한, 그 결정에 정한 한도내에서 (이 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d) 기타 연방보증법

(이 법 제2조 제c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은 연방법에 의하여 달리 지배되는 내용 또는 작성된 서면보증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면보증의 내용 일부가 연방법에 의하여 지배될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일

(a) 이 법의 시행일

이 조 제b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1975년 1월 4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나 그 날 이전에 제조된 소비자 제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제2조 제a항의 시행일

이 법 제2조 제a항은 동조에 관한 규칙의 최종공포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위원회가 상당한 이유를 입증함에 의하여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의 준수를 서면보증에 포함하도록 지정된 공급자 단체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그 규칙의 최종 공포 후로부터 1년내에는 그 조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c) 규칙의 공포

위원회는 1975년 1월 4일 이후에 지체없이 이 법의 최초 이행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로부터 1년이내이어야 한다.